

상주시 공고 제2024-296호

「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

상 주 시



「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「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」에 조문 신설 및 인용을 통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회발전특구 제도 지원을 위해 특구 내 창업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.
- 나. 법 조문을 “자동이체”에서 “자동납부”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.

3. 개정조례(안): 붙임참조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13일까지 상주시장(참조: 세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간: 2024. 2. 22. ~ 3. 13. (20일간)

나. 제출방법: 우편, 이메일, 팩스

다. 기재내용: 성명, 주소,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, 의견 등

라. 제출처: 상주시장(세정과)

- 1) 일반우편: (우742-706)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(남성동) 상주시청 세정과
- 2) 이 메 일: choe1234@korea.kr
- 3) 팩 스: 054-537-6129(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)

5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세정과(☎054-537-725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 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 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